

# 일본 CATV 난시청 문제와 의무재전송

CATV의 디지털시대를 앞두고 제도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의 경우는 중계유선과 종합유선의 조희문제가 큰 과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복지차원의 난시청해소의 기본 목적이 소홀해 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일본의 CATV제도 정책 중 난시청 해소 관련 의무재전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I. 의무재전송과 CATV 유형별 대응

### 1. CATV 제도 현황

일본의 CATV는 지역밀착형의 영상전송 미디어로서 사회에 밀착되어 오고 있는데 이에 동반하여 1972년에 유선TV방송법이 제정되어 이후 이 법제도에 근거하여 CATV는 규율되어 왔다. CATV는 제도적으로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내장단자 수가 501이상인 것으로 이것은 시설설치에 대해서 우정대신의 허가와 업무개시 시에 신고가 필요하다. 일정 규모를 넘은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영향 정도에 따라 시설설치 시에 허가제를 취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내장단자 수가 51이상 500이하의 것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서술하는 시설설치 허가는 필요치 않으며 업무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셋째, 내장 단자 수 50이하인 경우에는 다음에서 서술하는 유선TV방송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제도적으로 CATV는 규모에 의하여 ① 501이상, ② 51이상 500이하, ③ 50이하로 구분된다.

①과 ②에 대해서는 유선TV방송법으로 규제한다. 퇴출, 요금, 채널 대여 등에 대해서 약간의 규제가 있으며 프로그램 규율에 대해서는 방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방송프로그램 편집 등에 자기 규제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되어 있다. 이 밖에 외자 규제가 있었는데 외자규제 조항을 완전 철폐하는 유선TV방송법 개정이 1999년 5월에 실시되었다.

〈표 1〉 CATV의 제도 개요

항 목	· 내장 단자수가 501이상 규모의 CATV시설 설치에는 우정성 대신의 허가 및 업무개시 신고 필요 · 내장 단자수가 500이하 규모의 CATV시설은 유선TV방송법에 의한 업무개시 신고 필요(법 제3조 제1항, 12조)
참 가	· 신고 필요(법 제11조, 18조)
퇴 출	· 요금에 관한 계약 약관의 신고 필요. 소규모는 자유(법 제15조, 31조)
요 금	· 의무 재송신을 실시하는 시설은 요금 이외의 제공조건에 관한 계약 약관에 대하여 우정대신의 인가를 얻어야 함. (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채널대여	· 허가를 받은 CATV 시설에 대해서는 빈 채널을 희망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안됨.(법 제9조)
프로그램 규율	· 방송프로그램의 편집에 대해서는 방송법 규정 적용(법 제17조)
재송신	· 재송신 동의, 의무 재송신, 대신재정에 대하여 규정(법 제13조)
적용 제외	· 동시 재송신 만을 실시하는 내장 단자수 50이하의 CATV에 대해서는 유선TV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음.(법 제31조)

## 2. 재송신

타 통신·방송의 제도와 크게 다른 CATV특유의 제도가 재송신이다. CATV발생의 단서는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이며 현재에도 지상파·BS·CS의 재송신이 CATV의 주요 메뉴이다.

재송신은 구역 내 재송신과 구역 외 재송신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구역이란 지상파 방송의 방송국 서비스영역을 말하는 것이다. 관동지역과 같이 광역적인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도도부현을 방송서비스 영역으로 하는 것이 많다. CATV가 있는 도도부현에서 방송되는 TV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이 구역 내 재송신이며 근접 현 등의 타 도도부현에서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 것을 구역 외 재송신이라고 한다. 특히, 구역 내 재송신 중에서 특별한 것은 의무 재송신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CATV의 서비스 영역 안에서 특별하게 수신장애가 발생하는 구역이 있다는 것을 우정대신이 지정한 경우에는 그 현 내에서 방송하고 있는 방송국 프로그램을 그 CATV가 재송신하는 경우에 방송국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 수신장애 지역에서는 재송신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제도화하여 수신장애 지역의 수신자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외적인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재송신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방송국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는 방송국과 CATV사업자 양자의 의견교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 실태다. 협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정대신에게 재정신청하여 전기통신심의회의에의 답변·답신을 걸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방송국의 이의를 인정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재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우정대신 재정 제도이다. 예를 들어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국의 의견에 반하여 일부를 삭제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단, 실제적으로 이 제도는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방송국과 CATV사업자 협의에서 합의가 되어 왔다.

여러 외국에도 재송신제도가 있지만 각 국가의 사정에 의하여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CATV사업자에 대하여 의무재송신 제도가 있다. 특히 미국은 보급률이 65%를 넘고 있으며 정보인프라 보유자의 우위적 지위의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으며 지상파방송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재송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재송신제도를 강구할 때에는 밀접하게 관련하는 것이 저작권 문제이다.

<표 2> 외국의 의무재송신 제도 개요

항 목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근거	유선TV방송법	연방통신법	방송법	노스트라인 웨스트 팔레인 주 미디어법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관한 법률
내용	· 우정대신이 지정 한 수신장에발생지역 내에서 지방 모든 TV방송 및 TV방송 다중방송의 동시 재송신을 의무화	· 지방상업방송 및 비상업교육방송의 재송신 의무 있음 (방송사업자에 대가는 요구하지 않음) · 디지털방송의 재송신의무에 대해서는 고어의원회에 의한 주요검토항목으로 취급되었지만 합의 형성 되지 못함	· 지상파의 아날로그 방송에서 전국방송 하고 있는 BBC1, 2, 채널 3, 4, 5중 하나는 CATV에서 재송신되고 있음 · 96년 방송법에 의하여 디지털CATV 회사에도 머스트 캐리의 책임 부과	· 법률에서 결정한 방송프로그램(시험 방송 프로그램 및 로컬 방송프로그램 포함)의 재송신 의무 있음 · 디지털방송의 재송신 의무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검토 되어 있지 않음	· 해당 지역에서의 수신 가능한 지상파 재송신 의무화 가능
보급률	14.8% 98년 3월말 현재 대 전세대 수	66.23% 98년 2월말 현재 대 TV시청세대 수	10.8% 98년 7월말 현재 대 TV시청세대 수	53.8% 97년말 현재 대 TV시청세대 수	11.6% 98년 6월 현재 대 TV시청세대 수

## II. 다양한 CATV 유형과 대응

기술혁신 등에 의하여 CATV는 스스로 그 형태를 변화시켜 왔으며 CATV를 둘러싼 환경도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 왔다. 그 결과 CATV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규모·기능이 다양하다. 예를 들면, 난시청 지역에서 지상파TV방송 수 채널 분의 재송신만을 실시하는 CATV에 있어서는 다채널전송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고기능이 아닌 저렴한 가격의 장치로도 가능하며 스튜디오 등의 프로그램 제작용 설비도 필요하지 않다. 한편 자주방송을 실시하는 CATV에서는 다채널방송을 전송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고가·고기능 장치가 사용되어 센터에는 본격적인 스튜디오 설비를 설치, 시청자 측의 각 가정에는 영상신호를 TV수신사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신호변환을 위한 단말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종래의 시설은 하한신호만을 증폭하는 기능의 증폭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에 반해 최근 등장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CATV에서는 양방향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것과 함께 송신측·수신측에 각각 통신용 기제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최근 설치된 시설에서는 전송로의 간선부분을 광케이블화한 것도 많다. 이 장치들을 장비한 CATV시설과 그렇지 못한 시설과의 사이에는 기능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의하여 전송로의 길이도 다양하다. 또한 자주방송을 실시하는 사업자 수는 720개 사업자가 있지만 가입세대 수는 672만이며 1개 사업자 당 9,300세대가 시청하고 있는 것이 된다. 한편 재송신만을 실시하는 CATV에 대한 사업자 수는 4만 2,000개 이상이며 이에 대응하는 가입세대는 776만에 그치고 있다. 1개 사업자 당 182세대이며 50배의 차가 있는 것이다.

CATV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 대소의 격차가 매우 크다
- 넓은 시설과 새로운 시설에서의 기능차이가 크다
- 도시와 지방에 의하여 CATV에 대한 취급방법이 틀리다
- 자주방송과 재송신만을 실시하는 것에는 기업형태가 매우 다르다

등 큰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는 거의 ‘자주방송을 실시하는 CATV’와 ‘재송신만을 실시하는 CATV’로 분류되어 왔지만 이러한 파악방법은 지역의 영상소프트 미디어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통신인프라는 최근 CATV에 요구되고 있는 요건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히 향후의 디지털화 등 고도화에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형태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일반론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전기통신담신에서도 사업자가 향후 그 시설을 고도화 할 때 가장 배려해야 할 것이 ‘시설의 친구’나 ‘사업규모’등의 요소나 시청자가 이

용할 때 고려하는 ‘자주방송 유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형태별로 분류하여 다음으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를 유출하여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 1. MSO형

일본의 CATV는 난시청지역에서 한정된 세대를 위한 재송신미디어로서 탄생하여 그것이 커뮤니티영상을 방송하기 위하여 광역화되어 지역 영상미디어로서 발달되어 왔다. 따라서 지역 공유재산적 색채가 강하며 CATV 허가에는 지방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의 CATV는 MSO(Multiple System Operator)이라고 불리는 전국 각지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CATV회사의 발전과 함께 보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일본에서도 1993년도에 규제를 완화하여 지방요건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서도 타이타스와 슈퍼터라는 2계열의 MSO가 탄생하였는데 양쪽 모두 일본의 종합상사와 미국의 CATV회사·통신회사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영리목적의 주식회사 형태이므로 한 개의 사업자가 복수의 시설을 보유·운영하여 도시를 중심으로 폭넓게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시설이 새것이므로 비교적 광대역이며 간선의 광케이블화도 진행되어 있다. 그 결과 채널 수는 평균 40채널에 가깝다. 또한 대부분이 다채널방송 이외에 양방향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제1종 전기통신사업 허가를 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많다. 1개 시설당 단자 수 수만 이상, 대상세대 수는 10만 이상이라는 대규모 시설도 많다. 미국의 CATV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므로 MSO형의 특징은 자주방송 프로그램에 그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스튜디오도 소규모인 것이 많다. 지상파나 위성의 재송신은 많은 채널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장 비즈니스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자치체 직영은 없다. 영업 연수는 평균 4·3년이며 역사가 가장 짧으므로 경영상황은 전체의 23.5%가 단년도 흑자이다.

## 2. 시가지 통신가능형

지역의 영상유통기반·통신인프라로서 위치 정립된 CATV가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데 이것이 제2의 유형이다. 역사가 짧아 전승로는 광대역화되어 있으며 간선의 광케이블화도 진행되어 있다. 새로운 시설에서 양방향기능이 있으며 약간의 추가 투자에 의하여 제1종 전기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아 인터넷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가지 통신가능형’이라고 말한다.

주로 지방 민간자본에 의하여 지역별로 설립된 것으로 1개 사업자가 1개의 시설을 보유·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난시청지역에 한정하지 않는다. 영리목적의 주식회사로 지방자치체가 출자하여 제2센터방식의 경영형태가 많다. 단자수·대상세대수는 1개 시설당 수반이상이며 또한 새로운 시설로 인해 37채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영업년수가 짧으므로 현재 경영이 어려운 곳이 많다.

MSO과의 차이는 특히 커뮤니티 채널이 충실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TV프로그램은 동경을 무대로 한 것이 많으며 지방프로그램도 현청 소재지의 뉴스가 많다. 이것은 폭넓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정보가 도시에 많으므로 프로그램제작자가 동경이나 현청 소재지 등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청소재지에서도 작은 현내 제2나 제3의 마을에도 소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국 방송이나 현단위 민방에는 별로 취급되지 못한다. 이러한 지역의 욕구에 응하는 것이 커뮤니티 채널이다. CATV인터넷과 커뮤니티 채널에 의하여 가장 활발하다.

### 3. 시가지 통신가능형

이 형태는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일본 CATV의 단서는 산속 등 TV 전파가 닿지 않는 지역을 위하여 재송신용 공동 시청시설에서 발전된 것이다. 발생경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주로 지방민간자본에 의하여 지역별로 설립된 것이며 1개 사업자가 1개의 시설을 보유·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운영목적의 주식회사 형태가 많으며 해당지역 대부분의 가정이 가입하고 있으며 세대보급률은 매우 높고 역사가 매우 깊으며 경영상태도 나쁘지 않다. 현재 일본에서 CATV가 보급되어 있는 것은 나가노현 등이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시가지 통신가능형태이다. 어느 정도 다채널방송을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대역은 제1이나 제2의 유형과 비교하여 좁으며 채널수도 많지 않다. 간선부분의 광케이블화는 진행되어 있지 않으며 한쪽 방향 전송 기능밖에 없으므로 통신인프라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오래된 것이 많으므로 향후 디지털화 등에 대응할 경우에 큰 시설보수가 필요하다. 한편 단자수·대상 세대수는 1개 시설당 5,000에서 수만 이하의 중규모 시설이 많다.

### 4. 농촌형

앞에서 서술한 3가지 형태는 주로 주식회사가 시장원리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것이 많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전혀 채산적이지 못한 곳도 많다. 그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 형태이다. 이것은 농촌 수산성의 구조개선사업으로 농촌진흥지역의 고도화의 일환으로 CATV를 정비하는 것이다. 종래의 근접난시청대책 시설을 고도화한 것이 많다. 영리목적은 없으며 자치체 직영에 의한 것이 매우 많다. 전송로는 450MHz정도이며 채널수도 평균 16채널

로 많지 않다. 1개 시설의 단지수도 2,000에서 1만정도이며 광케이블이나 통신서비스 제공은 일부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 5. 도시 난시청 대책형

이상의 패턴이 자주방송을 실시하는 형태인 것이다. 4가지 형태를 종합하여 1997년 말에 720개 사업자, 670만 세대가 가입했으며 이외의 지상파방송 등의 재송신만을 방송하는 형태이다.

'4'의 형태가 빌딩 등에 의하여 TV방송 수신장애 대책을 위하여 도시에 설치한 것이다. 고층건축물이 생기면 종래 시청할 수 있었던 TV화면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건물이 전파가 흐르는 곳을 통하여 전파를 반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원인이 확실하므로 건축주가 지금까지 볼 수 있었던 TV를 원래대로 복구하기 위하여 만든 CATV형태인 것이다. 지금까지 시청 가능했던 TV의 지상파TV방송을 종전과 같이 볼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업무만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채널로 할 필요가 없으며 전송로도 250MHz 정도의 협대역인 것이 대부분이며 평균8채널 정도이다. 이 유형은 자주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광케이블화는 대부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한쪽 방향의 동축이 많고, 양방향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시설 수는 4만개 정도이며 600만 세대 정도가 가입하고, 1개 시설당 단지수·대상세대 수는 평균 200개 정도이다. 이와 같이 소규모시설이 대부분이지만 전력회사계의 중심에는 중규모 이상의 시설도 일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시설에 대해서는 디지털화·폴서비스화 등의 고도화방책도 검토되고 있다.

원인 제공자는 최초 시설을 정비하여 20년 정도의 유지비를 들여 보상하는 것이 평균적이며 흑자회율은 매우 높다. 설치목적은 비영리인 것이 많으며 경영형태는 조합운영 등이 많고, 자치체나 제3센터 운영비율은 낮다.

일본에서 고층 건축물이 증가한 것은 1963년의 건축기준법 개정 이후로 고도경제성장 시기였으므로 낡은 시설이 많고 허가시설의 평균 연수가 대부분 14년이다. 실태 파악이 가능한 허가시설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낡고 적으며 협대역이므로 새로운 발전가능성을 찾기 어렵다.

## 6. 근접 지역 난시청 대책형

TV국이 방송을 개시한 경우 현청 소재 도시 등의 대도시 근접의 “신국”으로 불리는 큰 TV탑에서 무선 전파가 발사된다. 약 70%의 가정에서 이 신국으로부터의 전파로 커버되는데 다음으로 그 전파가 커버할 수 없는 세대를 대상으로 “중계국”이라고 하는 중규모 TV탑에서 전파를 발사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커버할 수 없는 지역에는 “사테라이트국”이라는 소규모 전파탑을 설치하여 순차서비스 영역 전지역을 커버한다. 이러한 흐름으로 NHK나 민방이 서비스 영역을 전지역으로 똑같이 방송파가 전달되도록 전파탑을 설치한다.

발생경위 약 2만개, 시설 160만 정도, 세대수 50가구, 100가구 정도의 소규모 시설이 많으며 경영형태는 비영리인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지상파 TV가 최저한 방송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송로는 250MHz 이하의 협대역이며 모두 동축케이블, 한쪽방향, 자주방송이 없고 소채널이다. 또한 넓은 것이 많으며 향후 디지털화 등에 대응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7. 집합 주택형

밀집한 의미에서는 CATV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맨션 등의 집합 주택에서는 공동으로 안테나를 설치하여 거기에서 각 가정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다. TV신호를 도중에 증폭하여 복수의 가정에 송신한다는 기본 구조는 타 CATV시설과 같으며 전기통신담신에서 CATV로 분류되었지만 당연히 그 시스템은 집합주택 안에 있으며 집합주택 내의 세대수를 넘지 않는다. 전체에서 800만 세대 정도로 추정되는데 유선TV방송법 허가 등을 요하는 것은 대부분 없으며 정확한 실태는 불분명하다. NHK에 의하며 전세대 중 약 과반수가 자택에 안테나를 설치하여 직접 수신하고 있으며 나머지 반수는 간접 수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집합주택에 대해서는 직렬 유니트방식과 분산분배방식의 2가지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다.

직렬 유니트방식이란 옥상의 공동 안테나에서 수신한 신호를 각 가정에 직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며 분산분배방식은 옥상의 공동 안테나에서 수신한 신호를 각 가정에서 직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수년 전까지는 직렬 유니트방식 쪽이 일반적이었다. 이 경우에는 어느 가정이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지 고객관리의 개별대응이 불가능했으며 특히 IF방식에서 BS, CS 등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만이 채용 가능했었다. 집합주택의 동내 배선이 1계통인 경우 위성방송의 IF전송주파수가 같으므로 BS1위성, CS2위성의 3개 방송을 모두 수신할 수 없으며 주민협의를 의하여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는 BS가 선택되어 CS를 보고 싶은 사람은 베란다에 안테나를 실시하는 예



가 많으며 그 때, 미관상 베란다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 위성의 방향에 맞추어 안테나를 설치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또한 직렬 유니트방식에서는 상한 잡음이 크므로 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이용이 곤란하다. 분산분배방식은 비용이 들고 직렬 유니트방식이 가진 문제점이 없으므로 최근 증가하고 있다.

어쨌든, 각각의 맨션, 아파트가 직렬 유니트방식인지, 분산분배방식인지는 개별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곤란하고 양쪽 모두 안테나를 공동으로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며 큰 설비투자를 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채널수도 적다.

### Ⅲ. 난시청 지역과 CATV의 대응

일본의 CATV는 군마현의 한 온천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수신지점이 TV탑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산꼭대기 등 자연지형으로 인해 전파가 닿기 힘든 지역에 있어서는 일반 가정용 안테나로는 깨끗하게 수신할 수 없다. 따라서 산 위 등의 비교적 전파상태가 좋은 곳에 공동이용형의 약간 큰 안테나를 설치하여 거기에서 각 가정까지 케이블을 끌어 TV를 본다는 대책이 강구되었다. 특히 NHK에 대해서는 방송법 상 전국 보급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유니버설 서비스로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작은 국을 순차적으로 설치하였는데 그래도 커버할 수 없는 지역을 위하여 근접 지역 난시청 대책용 공청시설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1968년 이전에는 지방이 설치한 공동수신시설에 대하여 NHK가 조성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불채산으로 인하여 차례대로 지방에서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남아 있으므로 향후 1983년까지는 지방과 공동설치를 하게 되었다. 또한 BS방송이 개시된 1984년 이후는 난시청 대책이 강구되게 되었으며 NHK지상파방송의 난시청지역에서 위성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체로부터 조성하는 제도가 만들어 졌다.

민방에 대해서도 난시청대책이 강구되었는데 차례대로 불채산지역이 남아 경영상의 제약으로 인해 NHK와 비교하여 난시청해소에 관해서 격차가 증대하였다. 1991년부터는 민방 TV가 1개도 볼 수 없는 지역에서 지방자치체가 중계국 등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조성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NHK도 민방도 난시청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는데 현행법상 난시청의 경우에 의무위반으로서 그 해소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수준에서 법률상의 강한 의무는 없다. 단, 국민에게 방송 효용이 최대한 보급되는 것을 희망하므로 이를 위한 전파라는 한정된 자원을 방송사업자에게 위탁한다는 사실에서 보면 방송사업자는 난시청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는 정신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 1. 도시난시청과 CATV

근접지역 난시청은 우선 전파가 닿지 않아 TV가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지역의 문제이지만 도시난시청은 통상의 장치에서 수신가능하였던 것이 고층건축물 등이 생겨나면서 TV가 후천적으로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도시난시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TV탑과 수신자의 사이에 큰 건축물이 건설되어 전파가 그림자가 되어 닿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전파가 약해짐과 동시에 화면에 수많은 백선이 생기며 비가 오는 것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한다.

반사장에는 TV의 화상이 보이기는 하는데 큰 건물 등에 전파가 반사하여 그것이 원래 전파보다 아주 조금 늦게 도착하므로 보통의 화면과 함께 늦게 도착한 영상이 겹쳐져 보이는 것이다. 누군가가 어떠한 이유에서 수신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의 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법류상의 명문규정은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재판상이나 재판 외의 와해 등 사법상의 해결이 계속되어 오던 중에 원인을 만든자가 지금까지 동일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원상 복귀하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사회관습처럼 정착되었다. 여기에서 1976년, 우정성에서는 지도요망을 발출하여 해결참고에 제공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건물 등의 전파장애 원인이 되는 것을 건설한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인자 부담주의가 제창되어 건축주와 수신자와의 사이에 당사자간의 협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현재에는 일반적으로 난시청의 원인이 건물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신자는 그 건물의 건축자나 건물주에 대하여 법적 청구권을 가진다는 것이 실태상으로도 정리되었다.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 헌법의 취지에서 건축주에 수신장애 해소를 위하여 일정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계약의 규범 내에 있다고 종래부터 해석되었으며 이 법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구성이 되어 있으며 상근권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에는 불법행위 취급하여 CATV가입에 의한 수신장애 해송의 경우 가입비·공사비용·10년 분의 이용료를 손해로서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가 나오고 있다.

선주자가 나중에 온 고층건축물로 인하여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시청가능 했던 TV가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원상복귀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고층건축물이 건설되어 수신장애가 발생된 후에 그 지역에 이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상복귀의 사고에는 넣지 않는다. 그 지역은 TV가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후에 이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상복귀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동수신시설이므로 후주자가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부가적 설비경비 부담을 조건으로 후주자에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많다.

## 2. 외국의 난시청 대책

일본에서 TV를 보는 것은 법률상의 권리로서 명확하게 인정되어 있지는 않다. 사회실태로서 지리적 원인에 의하여 개별 수신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보편적으로 TV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근접 지역의 난시청 대책형의 CATV가 설치되거나 빌딩건설 등의 수신장애 원인을 야기한 자가 원상복귀를 강구한다는 도시 난시청 대책으로서의 CATV가 설치되어 왔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을 보면 국토가 매우 넓으므로 전 국토에 양질의 전파를 보급하는 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이미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TV가 보급되기 전부터 대도시 고층건물은 매우 많으며 방송개시 당초부터 양질의 수신상황을 바라기 어려우며 수신장애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고층건물에 의한 도시 수신장애는 많기는 하지만 표면적으로 문제화되지 않았다. 또한, CATV자체가 매우 많이 보급되어 있다는 점과 TV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 자신이 부담하여 CATV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TV를 보는 것의 권리성에 대하여 법률상으로는 명확화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영국에서는 도시 미관의 관점에서 고층건물을 허가하고 있지 않으며 저층건축만 있으므로 건축물을 원인으로 하는 도시수신장애는 거의 없고, 일본과는 달리 산악이 많지 않으므로 근접지역의 난시청도 거의 볼 수 없다. 한편, 유선에서 난시청해소를 하는 풍조가 전통적이며 수신장애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은 그 정도로 강구되지 않았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원인자 책임주의를 명문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다. 도시에서의 고층건물 건축과 동반하여 수신장애도 큰 문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형 수신장애에 대해서 그 해소를 행정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독일은 수신장애는 문제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책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협의가 원칙이다.

이와 같이 TV를 보는 것이 권리로서 확고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실정에 따라 각 국 각각의 난시청 대책을 취하고 있다.